

Part3

**언론소송 관할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재판 지연 해소와
예측 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문윤정 | 동아일보사 변호사

언론소송 관할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재판 지연 해소와 예측 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문 윤 정
동아일보사 사내변호사

1. 서론

최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 소송에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이 정하는 토지관할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의 불일치가 실무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법원은 이를 전속관할로 보아 피고인 ‘언론사 소재지’ 법원만이 관할을 가진다고 보는 반면, 다른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특별재판적 및 관련재판적 규정에 따라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기록이 ‘원고 주소지’ 법원으로 송부될 때 그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를 전속관할로 해석하는 법원은 해당 사건을 관할 위반으로 보아 이송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판 지연 문제는 원고와 피고인 언론사 모두에게 절차적 불이익을 준다.

본 발제문에서는 언론사 사내변호사의 관점에서, 정정보도청구등 소송의 토지관할 성격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고 각 견해의 논거를 비교·검토한 후 실무적 시사점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의 내용과 해석론

가. 규정 내용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을 동시에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피고인 언론사의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를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특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단순한 관할 지정인지, 아니면 다른 관할을 배제하는 전속관할인지에

관한 것이다.

나. 전속관할 긍정설의 논거

첫째,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민사소송법의 일반 관할 규정과 달리 특별법인 언론중재법에서 명시적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 수 있다. 특별법이 특정 소송의 관할법원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는 입법자가 해당 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할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정보도청구등 소송은 언론보도의 내용과 그 허위 여부, 피해 존재 등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특수한 소송이다. 언론사의 소재지 법원이 해당 언론사의 보도 관행, 지역적 특성 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할 집중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다. 전속관할 부정설(임의관할설)의 논거

전속관할 부정설은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의 관할이 임의관할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민사소송법상 특별재판적 및 관련재판적 규정에 따라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속관할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그 취지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관할법원을 지정하고 있을 뿐, 이를 ‘전속관할’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대비되는 규정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²⁾ 등은 모두 ‘전속관할’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은 “제1항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손해배상청구의 병합을 예정하고 있다. 실무상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빈번하게 병합되어 제기되는데, 손해배상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민사소송

1) 제53조(전속관할)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2) 제36조(전속관할)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居所(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조에 따라 원고 주소지에도 관할이 인정된다. 이 때 언론중재법상 관할을 전속관할로 해석한다면 민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해 관련재판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즉,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정정보도청구를 병합할 수 없게 되어 원고(피해자)에게 두 번의 소송을 강요하거나 재판 관할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3. 실무에서 드러나는 문제

가. 관할 해석의 불일치가 초래하는 재판 지연

실무상 가장 큰 문제는 어느 견해가 이론적으로 더 타당한가가 아니라, 관할 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실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고 주소지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가 피고 측 관할 위반 주장 또는 법원의 직권 판단에 따라 피고 소재지 법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는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지연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보도의 적법성 여부가 장기간 불확정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이는 추가 보도나 후속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원고 역시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입는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나. 다수 언론사 공동피고 사건의 증가와 관련재판적 문제

최근 기사 인용 등 보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동일한 기사 내용이 다수 언론사에 의해 게재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다수 언론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전속관할을 엄격히 적용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민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해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언론사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 원고는 각각의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여러 법원에서 중복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 판단의 모순가능성, 소송비용의 급증, 당사자의 절차적 부담 증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공동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고 동일한 내용의 기사에 대하여 각기 다른 판단을 받을 우려가 높아진다.

4. 언론사 사내 변호사의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 방향

가. 원격 영상재판 제도의 적극적 활용

관할권 해석 대립이 해결되기 전까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현실적 대안은 영상재판의 적극적 활용이다. 언론 사건의 특수성, 즉 취재 인력의 증인심문 가능성, 다수 피고 사건의 증가,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영상재판 신청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관할 이송으로 인한 지연을 상쇄하고 언론사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

즉, 원고 주소지 법원에 사건이 계속된 경우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송신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보다 영상재판을 신청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는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과도 부합하며, 불필요한 소송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나.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실무 기준 통일 필요

궁극적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이 의견을 통일하여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손해배상청구 등이 병합된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만 확보된다면 관할로 인한 물리적 부담은 이송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신 영상재판을 신청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정정보도청구등 소송의 토지관할 성격에 관한 쟁점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언론피해 구제 제도의 실효성과 신속성, 피해자의 절차적 편의성, 언론사의 예측 가능성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법적 문제이다. 언론사에게 필요한 것은 특혜적 관할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법 적용이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은 실무적 기준을 통일하여 더 이상 이송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두 가치를 실무적으로 조화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기 때문이다.